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**산정한다**”를 “**산정하며, 자기자본은 직전 반기말 자기자본(단, 반기말로부터 2개월이 지난시점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. 이하 동조에서 같다)을 말한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**자기자본**”을 “**직전 반기말 자기자본**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 받은 차입자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할때는 연계투자 금액을 제1호나.목의 경우 4천만원, 제2호나.목의 경우 3천만원 이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1조(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) ① (생략)	제11조(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(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<u>산정한다</u> 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정하며, 자기자본은 직전 반기말 자기자본(단, 반기말로부터 2개월이 지난시점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. 이하 동조에서 같다)을 말한다.</u>
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이 <u>자기자본</u> 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직전 반기말 자기자본</u> ----- ----- -----
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
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

3. ~ 7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7조(대출한도 및 투자한도) ①
~ ⑤ (생략)

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
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
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
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른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⑦ · ⑧ (생략)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대출한도 및 투자한도) ①
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
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
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
및 지방공단 등으로부터 자본
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
받은 차입자가 「사회기반시설에
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할
때에는 연계투자 금액을 제1
호나.목의 경우 4천만원, 제2호
나.목의 경우 3천만원 이내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